

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3조제4항제9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(이하 "피해관리센터"라 한다)로 지정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피해관리센터의 업무) 영 제23조제4항제9호에 따른 피해자 지원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지원
2.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및 자료검토,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여부 결정·통보 지원
3. 법 제12조제1항·제3항, 제14조제3항, 제16조,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, 재심의 신청,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(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관한 접수 지원·확인, 자료제공 요청 및 요청된 자료의 활용,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보완

4.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손해배상금 신청자 또는 재심의 신청자 관련 정보의 입력·관리·활용
5. 법 제15조제1항, 제16조 및 영 제16조, 제17조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 지원
6. 손해배상금 신청, 재심의 신청,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 및 계속치료비 신청 등의 절차 안내·상담 및 홍보

제3조(재검토기한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